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강명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258호)

2026. 7.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ISA 비과세 한도금액 및 납입한도 상향	2

I. 개요

1. 강명구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18258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강명구의원 등 13인

(2) 제 안 일 : 2026. 4. 10.

(3) 회 부 일 : 2026. 4. 1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자산 형성 기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금융 상품을 하나의 계좌에서 운용하도록 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를 운영하면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배당·이자소득에 대하여 한도금액 내에서 비과세하고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9%로 분리과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납입한도는 연간 2천만원(총 1억원)이고,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금액은 200만원(서민·농어민형의 경우 400만원)으로 민생 경제를 위하여 세제지원의 폭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납입한도를 연간 6천만원(총 3억원)으로 확대하고, 비과세 한도금액 또한 600만원(서민·농어민형의 경우 1천20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91조의18제2항 및 제3항).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ISA 비과세 한도금액 및 납입한도 상향(강명구의원안)

현 행	개 정 안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과세 특례(제91조의18) ○ 특례내용 : 이자소득·배당소득의 합계액에 대하여 비과세 한도금액까지 비과세,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9% 세율로 분리과세 ○ 비과세 한도금액 - 일반: <u>200만원</u> - 농어민·소득 요건 충족자: <u>400만원</u> ○ 의무 계약기간: 3년, 단 계약기간 만료일 전 연장 가능 ○ 납입한도: 연 <u>2천만원</u>(이월허용), 총한도 <u>1억원</u>	☐ 비과세 한도 및 납입한도 확대 ○ (현행과 같음) ○ 비과세 한도금액 - 일반: <u>600만원</u> - 농어민·소득 요건 충족자: <u>1,200만원</u> ○ (현행과 같음) ○ 납입한도: 연 <u>6천만원</u>(이월허용), 총한도 <u>3억원</u> ○ 시행일: 2027년 1월 1일 ○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

* 강명구의원안 2026. 4. 10. 발의(의안번호 18258)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ndividual Savings Account, 이하 “ISA”)는 가입자가 예·적금이나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선택하여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통합관리 할 수 있도록 한 금융상품으로서, 국민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6년에 출시되었음.

[ISA 주요 내용]

구 분	주요 내용
가입대상	19세 이상 거주자(근로소득자 15세 이상) ※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제외
계약형태	투자중개형(직접 투자형), 일임형(위탁 투자형), 신탁형(운용 지시형)
운용자산	예·적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국내 상장주식, 채권 등
의무가입기간	3년(계약기간 연장, 계좌 해지·만료 후 재가입 허용), 납입원금 내 중도인출 허용
납입한도	연간 2천만원(총 1억원), 한도 미충족시 5년간 이월납입 허용
세제혜택	비과세 200만원(서민·농어민형 400만원) 및 분리과세 9%, 손익통산(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손 포함)

ISA는 중개형 ISA, 신탁형 ISA, 일임형 ISA 등 3가지 종류로 구분¹⁾되는데, 중개형 ISA는 투자자가 직접 국내 상장주식·채권·펀드 등에 투자(예금 등 미포함)하는 방식, 신탁형 ISA는 투자자의 운용 지시에 따라 예금·펀드 등에 투자(국내 주식 등 미포함)하는 방식, 일임형 ISA는 투자자가 금융회사에 투자를 위임하는 방식임.

[ISA의 종류]

구 분	중개형 ISA	신탁형 ISA	일임형 ISA
투자가능재산	국내상장주식, 채권 등	예금, ETF, 펀드, 등	ETF, 펀드 등
투자선택여부	가입자가 직접 투자상품 선택		증권사가 포트폴리오운용

1)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③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를 말한다.

2. 계좌의 명칭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좌일 것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른 투자중개업자(이하 이 조에서 “투자중개업자”라 한다)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개설한 계좌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에 따른 투자일임업자(이하 이 조에서 “투자일임업자”라 한다)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개설한 계좌
 -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탁업자”라 한다)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개설한 신탁계좌

□ 일반적으로 이자·배당소득에는 14%의 원천징수세율(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시 6%~45% 종합과세)이 적용되나, ISA 가입 활성화를 위하여 2016년부터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을 도입하였는데,

제도 도입 당시 비과세 한도는 소득 요건 충족 거주자²⁾는 250만원, 그 밖의 가입자는 200만원이었고,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는 9%로 분리과세 하였음.

이후 2017년 세법 개정으로 소득 요건 충족 거주자·농어민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400만원으로 상향되었으며, 2020년 세법 개정으로 소득요건을 폐지하여 19세 이상인 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가 확대되었고, 일몰기한을 삭제하여 제도가 영구화되었음.

다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도 출범 이후 지금까지 ISA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었음.

[ISA 제도 및 과세특례 연혁]

구 분	2015년 개정	2017년 개정	2020년 개정
가입대상	19세이상으로 소득이 있는 자		19세이상인 자
비과세한도	소득 요건 충족 거주자: 250만원 기타: 200만원	소득 요건 충족 거주자·농어민: 400만원 기타: 200만원	
일몰기한	~2018년	~2021년	제도 영구화

* 이자소득·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

2)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거주자

ISA는 손익의 통산 및 기간의 통산이라는 특별한 장점을 갖고 있음. 손익의 통산이란 ISA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과 과세 대상 금융상품의 손실이 통산³⁾되는 것을 말하며, 기간의 통산이란 이자소득·배당소득의 수입시기에 원천징수하지 않고 계약 해지일에 징수가 이루어지는 것⁴⁾을 말함.

이와 같은 장점에 더해 2021년 중개형 ISA 도입 등을 계기로 주식, ETF, 리츠 등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에 직접 투자할 수 있게 되면서 ISA 가입자 수 및 가입금액은 꾸준히 증가하였고, 2025년 12월 기준 가입자 수는 765만명, 가입금액은 48조원에 달함.

[연도별 ISA 가입자 수 및 가입금액 현황]

(단위: 만좌, 조원)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가입자수	239.1	212.0	215.4	207.7	193.9	342.3	463.0	493.2	598.5	765.2
가입금액	3.4	4.2	5.6	6.3	6.4	12.9	18.6	23.5	32.9	48.4

자료: 금융투자협회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현행 비과세 한도금액은 소득 요건 충족자·농어민의 경우 400만원, 그 밖의 가입자는 200만원이고, 현행 납입한도는 연 2천만원(총 한도 1억원)인데,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⑩ 법 제91조의18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소득에서 손실을 차감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각 투자대상자산별 소득에서 같은 종류의 투자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실을 차감할 것
2. 제1호를 적용한 후 남은 손실액은 배당소득에서 차감할 것
3. 제2호를 적용한 후 남은 손실액은 이자소득에서 차감할 것

4)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⑥ 신탁업자, 투자일임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탁업자등”이라 한다)는 「소득세법」 제130조 및 제155조의2에도 불구하고 계약 해지일에 이자 소득등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안은 비과세 한도금액을 소득 요건 충족자·농어민의 경우 1,200만원, 그 밖의 가입자는 600만원으로 확대하고, 납입한도 또한 연 6천만원(총 한도 3억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개정안을 既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5건의 개정안(박대출·정태호·이소영·임광현·이강일의원안)과 함께 비교하여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음.

[현행 및 개정안 비교]

구 분		현 행	박대출· 정태호 의원안	이소영 의원안	임광현 의원안	이강일 의원안	강명구 의원안
비과 세 한도	일반 투자자	<u>200만원</u>	<u>500만원</u>	<u>200만원+</u> <u>(100만원가</u> <u>입기간3년</u> <u>초과년수)</u>	<u>500만원</u>	<u>한도</u> <u>폐지</u>	<u>600만원</u>
	서민 농어민	<u>400만원</u>	<u>1천만원</u>	<u>400만원+</u> <u>(100만원가</u> <u>입기간3년</u> <u>초과년수)</u>	<u>1천만원</u>		<u>1,200만원</u>
	신설				<u>사회초년생</u> <u>1천만원</u> <u>신혼부부</u> <u>800만원~1</u> <u>천만원</u>		
납입 한도	연간 한도	<u>2천만원</u> (이월허용)	<u>4천만원</u> (이월허용)	2천만원 (이월허용)	<u>4천만원</u> (이월허용)	2천만원 (이월허용)	<u>6천만원</u> (이월허용)
	총 누적 한도	<u>1억원</u>	<u>2억원</u>	1억원	<u>2억원</u>	<u>3억원</u>	<u>3억원</u>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정책효과가 기대되는 측면이 있음.

☐ 첫째, ISA의 출시 목적인 국민 자산형성 지원기능의 강화를 도모

할 수 있음.

ISA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니라면 국민 누구나⁵⁾ 쉽게 가입 가능한 과세특례 계좌로, 가입자 수 및 가입금액은 2020년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2025년 12월 기준 가입자 수는 765만명에 달함.

[연도별 ISA 가입자 수 및 가입금액 현황]

(단위: 만좌, 조원)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가입자수	239.1	212.0	215.4	207.7	193.9	342.3	463.0	493.2	598.5	765.2
가입금액	3.4	4.2	5.6	6.3	6.4	12.9	18.6	23.5	32.9	48.4

자료: 금융투자협회

납입한도 및 비과세한도 상향 조정은 ISA를 통한 투자유인을 증가시켜 국민의 자산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둘째, 국내 자본시장의 수요기반 확충에 기여할 수 있음.

ISA 납입한도 및 비과세한도의 상향 조정은 국내 자본시장으로의 자금 유입 확대를 통하여 국내 증시 부양 및 기업 자금조달 환경 개선을 도모할 수 있음.

□ 셋째, 우리나라의 ISA 납입한도 및 비과세한도가 해외 주요국에

5)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① (생략)

1.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9세 이상인 자
2.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5세 이상인 자로서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자(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영국 ISA의 경우 연간 납입한도는 2만 파운드 수준(원화 약 4천만원)⁶⁾이고 비과세한도는 없으며, 일본의 경우 연간 납입한도는 360만엔(원화 3,420만원) 수준⁷⁾이고 비과세한도는 영국과 같이 따로 설정되지 않은 것에 비해, 우리나라의 ISA는 연간 납입한도는 2,000만원, 비과세한도는 200만원~400만원인 실정임.

[국가별 ISA 제도 비교]

구 분	우리나라	영 국	일 본 ⁸⁾
납입 한도	(現) 연 2천만원	연 2만 파운드 (원화 약 4천만원)	연 360만엔 (원화 3,420만원)
비과세 한도	<일반투자형 ISA> (現) 200(농어민등 400)만원→ (改) 600(농어민등 1,200)만원	없 음	없 음
편입 자산	예·적금, 채권, 주식, 펀드, 파생증권 등	(예금형) 예·적금, MMF 등 (주식형) 주식, 펀드, 사채·국채	주식, 상장지수펀드, 상장지수증권, 상장리츠 등 (예·적금 X)

자료: 재정경제부

□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ISA 납입한도 및 비과세한도 상향은 조세의 수직적 형평성

6) 1파운드 2,000원 기준

7) 100엔 950원 기준

8) 참고로 일본의 경우 2024년부터 소액투자 비과세 제도(NISA)의 납입한도 등을 아래와 같이 완화하였음.
일본의 ISA 세제지원 확대 주요내용 (新NISA, '24.1월 시행)

- 年 납입한도 : 일반형(現성장형) 120만엔 → 240만엔 / 적립형 40만엔 → 120만엔
- 총 납입한도 : 일반형(現성장형) 600만엔 → 1,200만엔 / 적립형 800만엔 → 1,800만엔
- 중복가입여부 : 일반형·적립형 중복가입 불가 → 성장형·적립형 중복가입 가능

* 적립형은 적립식 펀드만 편입 가능, 일반형(現성장형)은 주식, ETF, 리츠 주식형펀드 등 편입 가능
(자료: 재정경제부)

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음.

2025년 12월 기준 ISA에 가입한 1계좌당 평균 투자금액은 632만원 이고, 누적 투자금액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계좌의 수는 약 5만계 좌로 전체의 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전체 계좌의 상당수가 현행 납입한도에 미달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납입한도 및 비과세한도 상향에 따른 세제 혜택은 자금 여 력이 있는 고소득자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높음.

[ISA 가입자 및 투자현황]

(2025. 12월말 기준)

구 분	신탁형	일임형	중개형	합 계
가입계좌(만좌, A)	92.0	13.9	659.2	765.2
전체 투자금액(억원, B)	152,666	13,087	317,938	483,691
1계좌당 투자금액(만원, B/A)	1,659	944	482	632

자료: 금융투자협회

[투자금액 수준별 인원]

(2025. 12월말 기준)

구 분	계좌수(천좌)	비중
1만원 이하	4,221	55.2%
1만원 ~ 10만원	337	4.4%
10만원 ~ 3백만원	974	12.7%
3백만원 ~ 5백만원	237	3.1%
5백만원 ~ 1천만원	382	5.0%
1천만원 ~ 2천만원	818	10.7%
2천만원 ~ 4천만원	421	5.5%
4천만원 ~ 6천만원	146	1.9%
6천만원 ~ 8천만원	64	0.8%
8천만원 초과	51	0.7%
합계	7,652	100.0%

자료: 금융투자협회

또한, 현행법은 ISA 가입 이후 3년 전에 양도나 환매·일부환매를 하는 경우 감면 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무투자기간이 3년으로 정해져 있는데⁹⁾, 자금여력이 충분하지 않고 장기투자의 여력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저소득층의 경우 ISA 활용에 일정한 제약이 있을 수 있음.

□ 둘째, ISA 납입한도 및 비과세한도를 상향 조정하더라도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는 제한될 수 있음.

우리나라의 ISA 자산 중 예·적금의 비중은 감소하고 주식·펀드(ETF 포함)의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이나, 국내 상장 해외펀드(ETF 등) 비중도 확대되는 추세로, 국내 상장 해외펀드(ETF 등)의 비중은 2024년 12월 기준 19.7%에서 2026년 2월 기준 24.7%로 확대¹⁰⁾되었음.

따라서, ISA 납입 금액이 국내 상장주식·펀드가 아닌 국내 상장 해외펀드(ETF 등)로 이동할 경우 ‘국내 자본시장 수요기반 확충’이라는 정책 효과는 제한될 수 있음.

9)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⑦ 신탁업자등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계좌보유자의 사망·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중도해지”라 한다)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

10) 또한, 국내 상장 해외펀드(ETF) 확대는 환율 안정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ISA 투자 비중]

(단위: %)

	예·적금	국내주식·펀드	국내 상장 해외펀드(ETF 등)	그 외
2024년 12월 말	47.8	28.3	19.7	4.2
2026년 2월 말	29.1	43.4	24.7	2.8

자료: 재정경제부, 금융투자협회

□ 셋째, ISA 납입한도 및 비과세한도를 확대하는 경우, 조세지출 규모 증가에 따라 세수가 감소할 우려가 있음.

개정안은 비과세한도 및 납입한도를 모두 현행 대비 3배 수준으로 상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과세 및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금융소득 규모가 증가하여 조세지출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비과세한도 및 납입한도 확대에 따른 세수 감소에 대한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¹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연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예상)	2026년(예상)
규모	54	75	277	354	381

자료: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서

문 의 처

02)6788-5150

11) 재정경제부는 ISA에 대한 지원 확대는 서민·중산층 자산형성 및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취지, 무기한 과세이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할 필요가 있고, 국내주식 등에 투자하는 '생산적 금융 ISA' 신설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개정안에 부동의 입장